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57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조인철 · 김우영 · 이건태
이정문 · 김태년 · 이개호
이정현 · 정일영 · 양부남
민형배 · 최혁진 · 서천호
정준호 · 박용갑 의원
(14인)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구개발(R&D) 역량, 첨단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그 결과 다수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 · 연구 · 취업 · 정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보유한 산업·인재·기술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연구 성과 또한 지역 내 축적·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확산시키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도지사는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

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시·도지사는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요조사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려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지역 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지역 주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

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3. “지역과학기술”이란 지역 또는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4. “지역과학기술혁신”이란 지역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제6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에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 “지역공공연구기관”이란 지역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지역공공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지역과학기술인”이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학·공학 등의 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역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및 초광역권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

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책임과 역할) ①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지역연구 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연구자를 지원하며,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과학기술인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제6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기술”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목표, 재원 확보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 지역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역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체의 육성·지원, 기반 및 환경 조성 등의 정책 추진 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⑨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5항의 기본지침, 제6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 및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운용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제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을 사업별·지역별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

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로 설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효율화 방안
2.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화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과학기술 집적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투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 시·도 혹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유사한 자문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구를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볼 수 있다.

②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전략,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의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가 되며, 위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설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비롯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지역과학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역자체연구

개발사업 공모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준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특정하여 공고하고, 대체할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연
구개발사업(이하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
다.

② 시·도지사는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
라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초광역권연
구개발사업 수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
른 추진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에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지역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및 지원

제16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역공공연구기관은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 기업과 협력연구 및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
3.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4. 우수한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촉진
5.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개발 및 활용 지원
6.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영

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지역거점연구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거점연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계획 및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지역거점연구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할 시·도의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된 기초 및 원천연구
2.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3.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③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 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
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공동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의 기술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
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수립
5.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은 신규 연구개발 인력 채용 시 관할 시·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등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교육·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①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

른 연구개발 수요 조사 시 제1항에 따른 정책을 검토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발굴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자료 수집 및 지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과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 정책연구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